- 지역관광산업육성 -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5519

제출일자 : 2019.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 가. 지역관광산업육성 사무를 수탁운영 중인 (사)대구관광뷰로와의 민 간위탁기간이 2020. 1. 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나. 1년 재계약을 통해 관광관련 재단이 설립되기 전, 증가하는 관광 사업과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추진 등 공백 없이 관광업무를 수행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지역관광산업육성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 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간의 선정기준 등) 등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위탁사무 기준), 제5조(위탁사무 대상) 등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제9조의2(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 추진 필요성

- 급성장하는 관광산업시장 대응을 위해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 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전담기 구에 지역관광산업육성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지역관광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 우리시가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전환기로 지역관광 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대상 : 지역관광산업육성 사무
 -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지원
 - 관광 수용태세 개선
 - 통합 홍보·마케팅
 -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 기타 관광진흥사업
- 라. 민간위탁기간 : 2020. 1. 2. ~ 2021. 1. 1.(1년)
 - * 2021년 재단설립 예정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민간위탁운영위원회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 성 심의 및 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19년 예산기준)

○ 소요예산 : 6,345백만원

- 관광전담조직 운영비 : 1,182백만원

- 사업비 : 5,163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사 업 내 용	2019년 예산액
	계	6,345
경상?	덕 경비	1,182
	관광전담조직 운영	1,182
	인건비	920
	운영비(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262
사 업 비		5,163
	국내관광 마케팅사업	850
	해외관광 마케팅사업	1,150
	대구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108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2,000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사업	230
	중화권 대상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300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해 준비	525

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2019년 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2019.9.24.) 개최 : 재계약 적정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2019.9.30.) 개최: 재계약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 2

다. 민간위탁 협약서(안) : 붙임 3

붙임 1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시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삭제 〈2011. 9. 15.〉
- 라. 삭제 〈2013. 11. 20.〉
- 마. 삭제 〈2013. 11. 20.〉
- 바. 삭제 〈2013. 11. 20.〉
-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 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쪼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2. 시립병원, 보건 ·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3. 환경 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 4.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5. 체육·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쪼례

제6조(위탁사무 선정기준)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3. 경제적 효율성
-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 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마지막 달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관리부서에 통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互選)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쪼례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

-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 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호선(互選)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쪼례

제18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 4. 수탁기관의 의무
- 5. 관리·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 6.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8.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
-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치결과,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쪼례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관광정보센터 관리 · 운영
- 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설치할 수 있으며, 전 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9.20.]

붙임 2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지역관광산업육성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사)대구관광뷰로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시기('20. 1. 1.)가 도래함에 따라 관광진흥사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O「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8호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O「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5조
 - 민간위탁 및 대상기간 선정기준,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
- O「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내지 제19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위탁사무의 대상, 위탁사무의 선정기준 등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제9조 ~ 제9조의2
 - 관광업무의 위탁 등, 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2 추진 방향

- 지역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사)대 구관광뷰로에 위탁·운영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 재계약 근거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제9조의2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의2(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민간위탁 개요

○ 수탁기관 : (사)대구관광뷰로

○ 위탁기간 : 2020. 1. 2. ~ 2021. 1. 1.(1년) * 최초 위탁일 : '17. 1. 2.

* 2021년 재단설립 예정

O 위탁사무

- 지역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지원
- 관광 수용태세 개선
- 통합 홍보·마케팅
-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 기타 관광진흥사업
- O 위탁 운영비 산정

- 2019년도 예산 편성 : 6,345백만원

(단위:백만원)

사 업 내 용	2019년 예산액
계	6,345
경상적 경비	1,182
관광전담조직 운영	1,182
인건비	920
운영비(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262
사 업 비	5,163
국내관광 마케팅사업	850
해외관광 마케팅사업	1,150
대구관광 콘텐츠 홍보마케팅	108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	2,000
대한민국테마여행 10선사업	230
중화권 대상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300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해 준비	525

O 2019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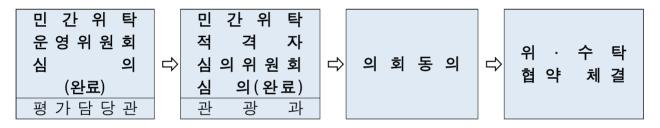
수탁기관	2019년
(사)대구관광뷰로	'나'등급, 87.74점

4 민간위탁(재계약)의 필요성

- O 사업의 연속성,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 O 향후, 관광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존 위탁기관인『(사)대구관광뷰로』와 재계약하고자 함
 - ※ 위.수탁 협약 연혁
 - 2017. 1. 2. ~ 2020. 1. 1. : 「(사)대구관광뷰로」에 위탁

5 세부 추진계획

□ 재계약 추진절차



□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 근거 법규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제9조
- 심의대상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
- 심의결과
 - 운영위원회 개최 : '19. 9. 24.
 - 심의 결과 : 재계약 '적정'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O 근거 법규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4조~제15조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6명(당연직 1, 위촉직 5)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
 - ·위촉직위원 : 관광분야 전문가 중 위촉
 - ·가 사: 관광정책팀장
- 기 능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확인
- 심의대상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
- 심의결과
 - 운영위원회 개최 : '19. 9. 30.
 - 심의 결과 : 재계약 '적정'

□ 의회 동의

- O 근거 법규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 O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일정
 - 심의 일시 : '19. 10월 제270회 임시회(10. 14. ~ 10. 22.)

□ 위·수탁 협약 체결

- 근거 법규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 제19조
- 주요 내용
 - 수탁자의 의무 : 위탁된 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관계법규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위·수탁 내용 : 관광업무 마케팅 업무 등 관광진흥 사업
 - 정산 및 보고 : 수탁자는 당해연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총괄 정 리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에 보고
 - 위·수탁 기간 : 2020. 1. 2. ~ 2021. 1. 1.(1년)

○ 행정사항

- 협약서 3부 작성 및 날인
- 협약서 공증

5 향후 일정

O 의회 동의안 제출 : '19. 10월

O 일상감사 및 협약서 심사 : '19. 11월

O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19. 11월

○ 시 홈페이지 공개 : '19. 12월

붙임 : (사)대구관광뷰로 일반 현황 1부.

첨부자료

(사)대구관광뷰로 일반현황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59(공평동)
- O 설립근거 : 「대구광역시관광진흥조례」제9조2(관광전담기관 설립 및 지원)
- 대표이사 : 오 용 수
- O 조직구성 : 1국 1단(TF팀) 3팀
- O 인력현황: 21명(대표이사 1, 사무국장 1, 팀장 4, 직원 11, 임시직 4)
 - ※ 팀장 1명 : 시 파견직원 포함
- O 예산현황('19년): 63억원(국비 15, 시비 48)
- O 연 혁
 - 2016. 05 : 관광분야 전문가 자문회의개최, 관광전담기구 설립방안 논의
 - 2016. 05 : 제251차대경컬로퀴엄, 관광전담기구 설립 의제 발표
 - 2016. 08 : (사)대구관광뷰로 추진위원회 발기인 사전회의 개최
 - 2016. 08 :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 2016. 10 : (사)대구관광뷰로 설립등기
 - 2016. 10 : (사)대구관광뷰로 사업자 등록
 - 2017. 01 : 대구시-(사)대구관광뷰로 간 업무협약

🧧 주요사업

- O 관광유형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및 타깃별 밀착형 세일즈 시행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관광도시 대구 견인
- O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단체상품 개발 및 관광객유치를 위한 세일즈콜 등을 통한 대구관광 인지도 제고 등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단체·특수목적·개별관광객 유치를 통해 시장 다변화 강화 및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 O 「2020대구경북관광의 해」사전준비의 일환으로 관광객 핵심접점에 대한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국내 및 해외관광객 유치 능력 강화

■ 주요 추진성과

분 야 별	주 요 성 과	비고
인바운드 여행사 지원통한 수용태세 확립	○ 국내여해사연항회 회원대상 대구단사여해 및 상품개박	
국내 관광객 유치위한 홍보	○ 대구관광블로그 운영: 6개채널 253건 발행 '18년 13백만명 방문 - '17,'18년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관광마케팅부분 대상선정, '18년 대한민국SNS대상최우수상 ○ 관광사진 전국공모, 여행스케치 공모 및 당선작 서울·부산 전시회 ○ Natural Daegu 등 10개테마 대구관광 홍보 영상 제작 확산 ○ 방송프로그램 활용 대구관광명소 홍보(총6회) - SBS 백종원3대천왕(2월), KBS2TV 배틀트립(3월), 화첩기행(7월), KBS1TV 친절의 神(8월) 등 ○ 대구관광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개최(서울, 부산 등) ○ 국내외 관광업계 및 유관기관 연계 세일즈콜 20회 추진 ○ 한국여행작가협, 중앙기자단, SNS취재단 팸투어 17회(140여회 기사화) ○ OTA, 관광영향력자 활용 대구관광 캠페인 등 온오프라인 홍보 총26회	
해외 관광객 유치위한 홍보	○ K-pop활용 홍보영상물 'Likey' 커버뮤비 제작(유튜브 166만회 조회) ○ 해외 온라인채널 '17년 중국(28만명), 일본(25만명), '18년 5개채널 650천명 홍보 ○ 중,일,대만 파워인플루언서 'Star of Daegu Tourism' 지정 6백만회 페이지뷰 ○ 중화권 관광영향력자 초청 대구 뷰티·미용·쇼핑 홍보 ○ 해외파워블로거 초청팸투어 : 총21회(중국6, 일본7, 동남아5, 기타3) ○ 중국유학생 925명 대상 총 4회 이벤트 추진 관광객 유치 ○ KTO·직항노선 연계 홍보(91회) 통한 해외시장 다각화 ○ 팸투어·세일즈콜 13회로 특수목적해외관광객 67건 6,142명 유치 ○ '17년 만관협력 시장개척단 운영(인니/말련(4월),태국/대만(8월),베트남(11월)) ○ 해외여행사 및 현지 B2B 상담회 11회 개최(홍콩,몽골,러시아,태국)	
정부 공모사업 추진	○ 3대문화권 관광아카데미, 스타관광벤처사업 통한 관광인프라 확충 - 대구관광 전문가(대구관광HERO/35명) 선발·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외국인유학생(120명) 및 지역민(80명) 대상 관광아카데미 운영 - 대구관광 스타트업 기업(9개) 발굴·컨설팅, 사업화 지원 및 홍보추진 ○ 선비이야기여행권역 관광업계 역량강화 및 인력 육성 - 관광외식사업체 대상 역량강화 컨설팅(7개사) 추진 - 청년선비해설가(22명) 육성교육 진행 및 국내여행안내사(16명)양성	

붙임 3 민간위탁 협약서(안)

- 대구광역시 ⇔ (사)대구관광뷰로 -대구관광진흥 사업 위·수탁협약서

위탁자:대구광역시

수탁자: (사)대구관광뷰로

- 대구광역시 ⇔ (사) 대구관광뷰로 -대구관광진흥사업 위·수탁협약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제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이하 "뷰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구관광진흥사업에 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시"가 대구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의 관광진흥사업 일부를 "뷰로"에게 위탁함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사업) "시"가 "뷰로"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위탁기간) ①본 협약은 위탁 개시일로 부터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대구관광진흥사업을 전담할 전문기관(재단, 공사 등)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와 "뷰로"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등) ① "뷰로"는 매 사업연도마다 관광진흥 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뷰로"는 매 사업연도마다 위탁사업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비 등) ① "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뷰로"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사후 정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 지급절차, 방법, 정산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③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자산의 취득 보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뷰로"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뷰로"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따른 "시"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① "시"는 "뷰로"에 대하여 위탁사업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업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시"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이행의 보증) ①"뷰로"는 위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월 15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 사업비의 100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 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 ②"시"는 "뷰로"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 제9조(민·형사상 책임) "시"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사고 의 민·형사상 책임은 "뷰로"가 진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뷰로"가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보고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뷰로"가 본 협약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위반한 때
 - 3. "시"의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기타 수탁자의 중대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 5. 대구관광진흥사업을 전담할 전문기관(재단, 공사 등)이 설립된 경우
- ② "시"는 제1항의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뷰로가 원에 의하여 수탁을 포기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일 5개월 전에 "시"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뷰로"는 "시"에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 제11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뷰로"의 협의에 의한다.
- 제12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중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시"와 "뷰로"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협약 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가주한다.

2021년 1월 2일

위탁자 : 대구광역시

시 장 권영진 (인)

수탁자 : (사)대구관광뷰로

대표이사 오용수 (인)

【별표】

위탁사업의 범위

사업영역	주요내용
지역 인바운드 여 행 사 육성·지원	▶ 뷰로 - 지역여행사 현지 공동마케팅, 컨설팅▶ 여행사 상품 개발지원▶ 해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및 행정지원
관광 수용태세 개 선	 서비스 체계 개선 접점별 음식, 숙박, 교통, 쇼핑 안내기능 강화 관광종사원 인력 양성, 친절마인드 함양 등
통 합 홍보·마케팅	▶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상품 개발사업▶ 관광자원 개발사업(콘텐츠, 야간관광, 특화관광)▶ 우수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지원	▶ 관광산업 분석▶ 인바운드 정책·마케팅 계획 수립 조사 연구
기 타 관광진흥사업	► 기타 대구시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사)대구관광뷰로에서는 상기 "사업영역" 외에도 "사업영역"의 범주에 속하는 신규사업 등을 지속 발굴·시행토록 적극 노력한다.